

# Issue Briefing

20140429 vol.127

The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진  
장 남 정 (정책사업연구부 연구위원)

#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 Issue Briefing

### C O N T E N T S

## The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                                |    |
|--------------------------------|----|
| I.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정책동향.....     | 5  |
| 1.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      | 5  |
| 2.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           | 5  |
| 3. 주요정책 변화 .....               | 6  |
| II.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현황..... | 10 |
| 1.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현황 .....        | 10 |
| 2.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요정책 ..... | 13 |
| III.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 14 |
| 1. 한계점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       | 14 |
| 2.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세부대책 ..... | 15 |

※ 본 이슈 브리핑은 2013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유관기관(전라북도 행정(환경보전과, 소방안전본부), 전북환경기술인 협의회,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의 도움으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1. 아무리 유용한 화학물질도 안전관리가 우선

화장품, 세제, 장난감, 휴대폰, 의약품, 농약 등 우리생활은 화학물질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유용한 화학물질도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주민 및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보완,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비록 정부 주도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는 지자체의 책무이므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2. 자체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나 어려움이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PRT: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수와 배출량이 각각 전국대비 4.9%와 2.8% 비중(201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3~2013년 9월까지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라북도는 정부대책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해 취급사업장 점검강화, 자율방재단 창단, 자체 응급매뉴얼 작성 등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점검 전문 인력 및 근거법이 상이한 유관기관의 소통이 부족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수습을 위한 정보(사업장 내외 폐수관망 등의 환경기반시설, 취급물질에 따른 필수 방재물품, 관련 시설기준 등)의 접근 및 공유가 어려우며, 관련 예산확보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성 등 안전관리 기반이 부족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유관기관 협력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통한 안전전북 구현

최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식이 개선되고 변경된 제도가 변화·정착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세부적인 제도 개선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이 다른 유관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부처 전문센터인 합동방재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초동대응 매뉴얼 확립, 합동훈련 실시 등 유해화학물질사고 초동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 전략 1                 | 세부대책                     | 주요내용                                                  |
|----------------------|--------------------------|-------------------------------------------------------|
| 유관기관<br>초동대응<br>협력강화 | 1. 유해화학물질사고 초동대응 협력강화    | 초동대응 매뉴얼 개발, 비상연락망 강화, 당직제, 자율방재단 등록 의무화, 응급실 협력강화 등  |
|                      | 2. 합동방재센터 지원 및 활용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
|                      | 3. 자율방재 협력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 전라북도, 관할 시군, 소방안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주민조직 등이 참여하는 모의 훈련 시행 |

둘째, 환경기반시설, 관련 시설기준, 사고피해 예상지역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 사업장 지도점검, 사고발생시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 및 차단, 다양한 사고대응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지역사회 감시망을 강화한다.

| 전략 2                         | 세부대책                      | 주요내용                                                                       |
|------------------------------|---------------------------|----------------------------------------------------------------------------|
| 유해화학물질<br>정보지원 및<br>공유시스템 구축 | 1. GIS기반 환경관리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정부 3.0과 창조경제 시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이동경로 파악 및 차단을 위해 GIS기반 사업장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                              | 2.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피해지도 작성    | 대기확산에 의한 피해지역을 시나리오(풍향, 물질, 지역 등)에 따라 모의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피 준비                 |
|                              | 3.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대응 정보 제공 | 물질별, 유형별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고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정보를 제공                      |

셋째, 정부의 정책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관련 예산 확보 및 영세기업 지원을 모색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전략 3               | 세부대책                          | 주요내용                                                       |
|--------------------|-------------------------------|------------------------------------------------------------|
| 지속가능한 안전관리<br>기반조성 | 1. 사업장 방재물품 관리 및 지원사업         | 방재물품 판매업체가 정기적으로 방재물품을 관리하고 일정비용은 행정 또는 기업에서 지원            |
|                    |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 운영 |
|                    | 3.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재난관리기금을 도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사업에 활용           |

## I.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정책동향

### 유해화학물질도 ‘안전’이 우선

#### 1.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및 에너지시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구미 불산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정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 원자력 안전 구현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함
- 특히, 구미산업단지 불산누출, 경기도 반도체공장 불산누출 등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지자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슴기 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가시적 사고뿐 아니라 일상적인 과정에서 배출되어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위해성(Environmental Risk) 측면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주목받고 있음
- 안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4대惡’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의 4대 폭력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통해 안전체감도 향상 정책을 추진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인권강화, 치유 및 재활 지원 체계 구축, 범죄예방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생활 및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사업을 추진함
-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선진방재대책을 마련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종합저감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재설정 등 구조적 대책을 추진함
  - 자연재해의 사전대비 및 사후 대책으로 기상예측을 통한 기후예보체계를 강화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예경보체계 구축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등 비구조적 대책을 추진함

#### 2.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 여종으로 매년 2천 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음
- 국내에는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진입되고 있음

- 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량 규모가 세계3위로 국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화학물질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은 일부이며, EU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위해성을 예방·저감하기 위해 신화학물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2007. 6.)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 화학물질은 7개 부처, 14개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근거법에 따라 소관부처와 유관기관의 역할 및 대상물질 중복 등의 혼선이 있음
  - 관련 부처(관리대상물질)는 환경부(유해화학물질), 고용노동부(건강장해물질), 농림수산물부(농약, 비료, 사료), 보건복지부(의약품, 마약류, 식품첨가료, 화장품), 행정안전부(위험물, 화약류), 지식경제부(고압가스), 교육과학기술부(방사능물질)로 구분되며 관리목적 및 대상물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국내 화학물질 관리법

| 관리대상       | 소관부처    | 근거법                         | 관리목적                                             | 대상물질                                                                              |
|------------|---------|-----------------------------|--------------------------------------------------|-----------------------------------------------------------------------------------|
| 유해화학물질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br>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관찰물질                                                 |
| 건강장해물질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                     | 노출기준설정(589), 직업환경측정(187), 관리대상(165), 허가대상(13), 제조금지(65)                           |
| 농약, 비료, 사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br>사료관리법       |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 향상과 수급관리                          |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등, 토지개량용 자재, 단미/배합/보조 사료 등                                            |
| 의약품<br>마약류 | 보건복지부   | 약사법<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 의약품 및 의약품, 미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
| 화장품        | 보건복지부   | 화장품법                        | 화장품의 안전관리                                        | 화장품                                                                               |
| 위험물, 화약류   | 안전행정부   | 위험물안전관리법<br>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확보<br>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 | 제1류(산화성고체), 제2류(가연성고체), 제3류(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속성 물질), 제4류(인화성액체), 제5류(가연성액체), 제6류(산화성액체) |
| 고압가스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 특정고압가스, 특수고압가스,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
| 방사선물질      | 미래창조과학부 | 원자력법                        |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                                     |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선 동위원소 등                                                          |

### 3. 주요정책 변화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기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함

- 개정일자 : 2013년 6월 4일,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주요변경사항

| 구분     | 기존                                                                                                                                                                        | 변경                                                                                                                                                                                     |
|--------|---------------------------------------------------------------------------------------------------------------------------------------------------------------------------|----------------------------------------------------------------------------------------------------------------------------------------------------------------------------------------|
| 취급시설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등록제 (지자체)</li> <li>• 제한물질 · 금지물질 허가제 (환경부)</li> <li>• 사고대비물질 취급은 등록 · 허가 없음</li> <li>•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필요시 안전진단 (지자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제 (환경부)</li> <li>•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환경부)</li> <li>•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및 필요시 안전진단 (환경부)</li> </ul>                            |
| 화학물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마다 유통량 조사 (환경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물질 취급 관리 (환경부)</li> <li>• 2년마다 유통통계 조사 (환경부)</li> <li>•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환경부)</li> <li>•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환경부)</li> </ul>                  |
| 도급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규정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신고 (환경부)</li> <li>• 수급인 지도 · 점검 (환경부)</li> </ul>                                                                                            |
| 안전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관리자 교육 (환경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운반자, 수급인 교육 (환경부)</li> </ul>                                                                                                  |
| 책임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지자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대비 5%이하 과징금 부과(환경부)</li> <li>• 단일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2.5%이하 과징금 부과 (환경부)</li> </ul>                                                           |
| 정보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환경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매년 1회 고지 (환경부)</li> </ul>                                                                                                 |
| 화학사고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 및 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환경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화학사고 즉시 신고 (환경부)</li> <li>• 화학사고 대비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환경부)</li> </ul>                                                                          |
| 화학사고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후 영향 조사(환경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사고 신고접수시 사고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환경부)</li> <li>• 사고후 사고원인, 주민건강 · 환경영향 조사 (환경부)</li> <li>• 사고원인자에 대해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 제거 등 조치명령 (환경부)</li> </ul> |

## 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 ● 제정목적

-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 · 공유하고,
-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 사업장 내 빈번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 제정일자 : 2013년 5월 22일,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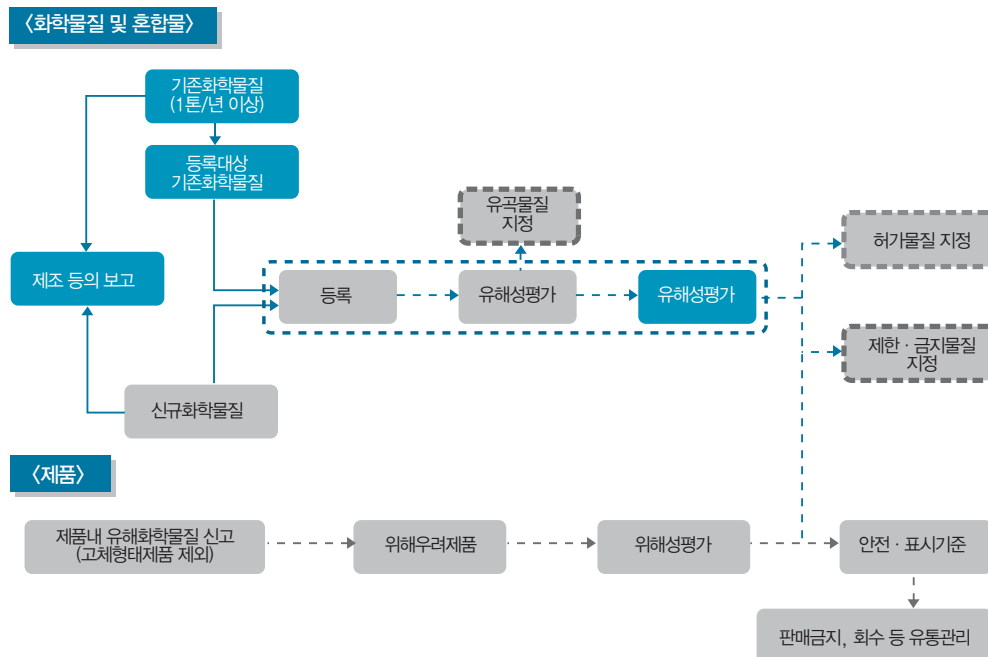
###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 제조 · 수입 ·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함  
\* 보고대상 : 등록대상과 동일(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 제조 · 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노출시나리오 포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

-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함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의 양도시 유·위해성, 안전사용정보 등의 연쇄적 공유,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상호 공유함
  - 위해우려제품 등의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함
  -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
- \* 위해우려제품 :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살생물제(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그림 1〉 화평법 체계도

## Ⅰ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2013. 7)

-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유해화학물질 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함



### ● 주요 내용

- [전략1]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 노후·취약시설 개선투자 확대, 사고 예방·대응시스템 확충, 원청업체 책임 강화, 현장 작업 안전문화 정착
- [전략2] 중소기업 및 취약분야 정부지원 확대 : 중소 영세업체 시설개선 지원 확대, 안전환경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강화, 전문장비·관리기술 개발
- [전략3]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 화학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제도 구체화, 화학물질별 특화된 취급기준 마련,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등
- [전략4] 국민-기업-정부간 협업과 소통 강화 : 협업에 기반한 점검 강화, 화학사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및 공개

|        |             |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 중소업체 및 취약분야 정부지원 확대                                                                                                                         |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 국민-기업-정부간 협업과 소통 강화                                                                                                                                            |
|--------|-------------|----------------------------------------------------------------------------------------------------------------------------------------------------------------------------------------------------|---------------------------------------------------------------------------------------------------------------------------------------------|-----------------------------------------------------------------------------------------------------------------------------------------------------------------------|----------------------------------------------------------------------------------------------------------------------------------------------------------------|
| 예 방    | 노후 취약 시설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시설 개선투자 (2.8조원, '13~'1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밀안전 진단 지원 '13년 112억원 '14년 103억원 요구</li> <li>시설개선 금융지원 중소기업 융자금 활용 ('14년 7,730억원 요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진단 의무화(매 2년)</li> <li>최상기술(BAT) 적용</li> <li>시설관리기준 세분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지도 점검 협의체 구성</li> </ul>                                                                                              |
|        | 안전 문화 정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경영자 중심 안전최우선 경영</li> <li>엄격한 상벌 적용 (Golden Rule)</li> <li>기업간 상생협력 누출탐지보수시스템 (LDAR) 공유 기업간 안전시스템 공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운영 기술지도 (2만여 개소, '14년)</li> <li>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점검형 교육 (화학사고 전문과정)</li> <li>외국인 근로자 특별교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리한 유지·정비 정보 제공 (스마트폰 기반)</li> <li>고위험물질 특별기준</li> <li>중간관리자,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계 대책반 - (산업계) 설비개선 투자 및 직업문화 개선확산, 우수 모범사례 공유 *(정부참여) 산업계 의견 지속 수렴, 정부 대책에 반영</li> <li>대-중소기업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li> </ul> |
|        | 시스템 개선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인력 확충 (삼성 340명, SK본부 신설)</li> <li>원청 책임강화 작업하기서 발부 안전감독관 배치 유해해위험정보 제공 미숙련자 멘토링제도 도급계약 개선 (최저입찰 중합평가 안전관리비용 계상)</li> <li>자율 시설실공정표준 및 관리지침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관리기술 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안전 전문기관</li> <li>장외영향평가제 (중대한 피해 방지)</li> <li>위해관리계획</li> <li>위험등급별 맞춤 관리 (고-중-저위험 사업장 구분)</li> <li>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정보 통합 공개</li> <li>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 시스템(CARIS) 고도화</li> </ul>                                                           |
|        | 화학 사고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즉시 확인, 신고 (사고재동검지 장치 도입)</li> <li>자체 사고 대응 훈련 (요청시 소방서 합동 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 보호창구, 휴대용 측정장비 개발</li> <li>맞춤형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보급 (업종별, 물질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119 자동 접수</li> <li>화학사고 대응기관 강화</li> <li>사고현장 환경측정·분석차량 확충</li> <li>오염물질 신속처리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수습조정관</li> <li>사고 대응전문가 Hot-Line (SNS, 대한화학회)</li> </ul>                                                              |
| 사 후 관리 | 수습 사후 관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배상제도 입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 합동 화학 사고 조사위원회 운영</li> </ul>                                                                                        |

〈그림 2〉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리 단계별 세부과제

## II.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현황

최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배출량은 전국대비 2.5% 수준임

### 1. 화학물질 배출 · 이동량 현황

#### 조사개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 · 이동량 조사(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종업원 30인 이상의 34업종 3,159개이며, 242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짐
- 대상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537개 사업장의 230개 화학물질로 가장 많았으며,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보고업체수는 경기도가 790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 399개, 경북 322개의 순이며, 전라북도는 156개(전국대비 4.9%)로 16개 지자체 중 9위 수준임
- 보고물질수는 전국 242종 중 전라북도가 충남과 함께 128종을 보고하여 152종인 경기도, 141종인 울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물질수가 다양함

〈표 3〉 지역별 조사사업장 및 화학물질 분포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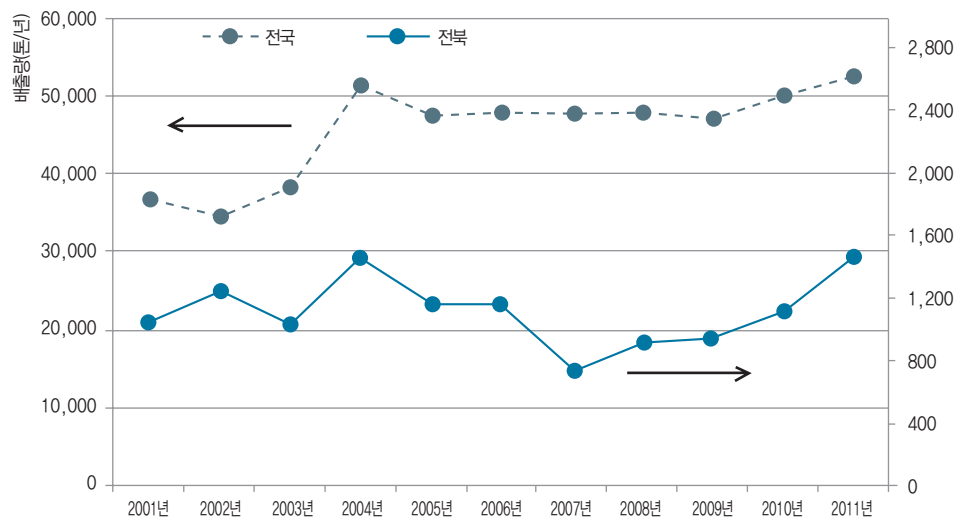
| 구분      | 합계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인천  | 대구  | 울산  | 전북  | 부산  | 전남  | 광주 | 대전 | 강원 | 서울 | 제주 |
|---------|-------|-----|-----|-----|-----|-----|-----|-----|-----|-----|-----|-----|----|----|----|----|----|
| 사업장(개소) | 3,159 | 790 | 339 | 322 | 272 | 241 | 196 | 191 | 183 | 156 | 151 | 124 | 59 | 58 | 39 | 32 | 6  |
| 화학물질(종) | 242   | 152 | 91  | 104 | 128 | 90  | 90  | 62  | 141 | 128 | 71  | 114 | 46 | 64 | 28 | 15 | 4  |

자료 :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환경부(2013)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업체는 2006년 145개소에서 2010년까지 안정화 경향을 보이다 2011년 156개소로 증가하였음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업체는 2011년 기준 익산시 48개소(30.8%), 군산시 42개소(26.9%), 완주군 25개소(16.0%), 전주시 15개소(9.6%)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화학물질 배출량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2004년 1,471톤에서 2010년 1,128톤으로 23.3%정도 감소하였으나 2011년 1,481톤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기준 전국 배출량 대비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전국 대비 평균 2.5%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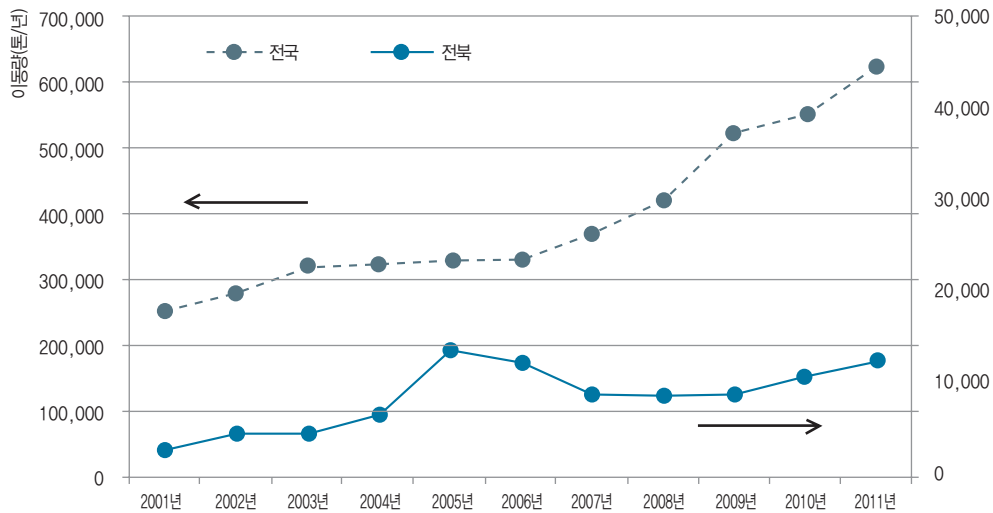


〈그림 3〉 유해화학물질 연도별 배출량 추이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시군별로 비교하면 2011년 기준 군산시 882톤(59.6%), 전주시 224톤(15.1%), 완주군 171톤(11.6%), 익산시 130톤(8.8%) 순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중 상위 20개 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일렌 755톤(51.0%), 디클로로메탄 134톤(9.0%), 톨루엔 65톤(7.9%), 에틸벤젠 45톤(4.4%) 순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전라북도 화학물질 이동량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은 2005년 13,772톤에서 2010년 10,712톤으로 13.5% 감소하였으나 2011년 12,598톤으로 증가 경향을 보임
- 2011년 기준 전국 이동량 대비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전국 대비 평균 2.2%의 비중을 보임
- 유해화학물질 이동량은 2011년 기준 완주군 6,141톤(48.8%), 군산시 3,121톤(24.8%), 익산시 1,168톤(9.3%), 전주시 935톤(7.4%) 순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중 상위 20개 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3,368톤(26.7%), 톨루엔 1,027톤(8.2%), 황산 1,010톤(8.0%), 메틸알코올 793톤(6.3%) 순으로 이동량이 많았음



〈그림 4〉 유해화학물질 연도별 이동량 추이

##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현황

- 2003~2013년 9월까지 전라북도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는 총 15건으로 시설관리 미흡 2건, 작업자 부주의 5건, 운반차량 사고 8건으로 집계됨
- 피해 건수로는 2006년에 5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으며,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이며 피해액은 37,840천원으로 보고됨

〈표 4〉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내용

| 발생일시     | 사고내용                                                          | 사고원인       |
|----------|---------------------------------------------------------------|------------|
| 2004. 03 | 완주군 페인트원료인 스티렌모노머 이송작업중 유출 사고                                 | 현장 작업자 부주의 |
| 2005. 04 | 전주 우이동 도로에서 차량 전복으로 유독물 및 차량의 유류 유출                           | 운전자 부주의    |
| 2006. 04 | 전주 폴리테틸렌 제조 공장에서 시험가동중 다우섬이 기화되어 폭발, 일부 열매체유가 공장바닥에 유출        | 작업자 부주의    |
| 2006. 05 |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공장의 황산탱크 균열로 황산 유출                                | 작업자 취급 부주의 |
| 2006. 06 | 군산시 도로에서 스티렌모노머 이송중 전복으로 스티렌모노머 유출                            | 운전자 부주의    |
| 2006. 07 | 장수군 도로에서 수산화나트륨 이송중 차량이 전복하여 수산화나트륨 유출                        | 운전자 부주의    |
| 2006. 10 | 익산시 공장내에서 브롬화수소가 함유된 알코올 회수중 철재드럼 부식으로 알코올 유출                 | 취급자 부주의    |
| 2007. 06 | 임실군 도로에서 아미노산 액체비료를 실은 카고트럭의 접촉사고로 액체비료 유출                    | 운전자 부주의    |
| 2008. 05 | 군산시 도로에서 암모니아 탱크로리 이송중 차량이 전도 되었으나 유출은 되지 않음                  | 운전자 부주의    |
| 2008. 05 | 완주군 도로에서 인산 운송차량의 엔진과열로 화재 발생하여 진화 중 인산 유출                    | 운전자 부주의    |
| 2009. 05 | 완주군 도로에서 메탄을 적재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하여 메탄을 농수로로 유출                     | 운전자 부주의    |
| 2009. 09 | 익산공단 공장에서 폐수처리장 황산탱크의 진류 75% 황산에 추가로 68% 황산을 넣다가 농도차에 의해 외부분출 | 취급 부주의     |
| 2013. 01 | 완주군 공장에서 감광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톨루엔 폭발                                 | 시설미비       |
| 2013. 05 | 군산시 공장에서 저장탱크 이송밸브 이상으로 황산, 과산화수소 누출                          | 시설미비       |
| 2013. 08 | 완주군 도로에서 과산화수소 탱크로리차량이 RV차량과 충돌하여 주입밸브가 손상되어 과산화 수소 누출        | 현장 작업자 부주의 |

※자료 : 새만금지방환경청, 2013. 09. 기준

## 2.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요정책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을 추진중이나 어려움이 있음

###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책

- 정기지도·점검 : 년·월간계획 수립 및 지적 사항 정밀점검
- 명절 연휴기간 사고 취약지역 순찰 : 설 및 추석 등 연휴
- 불산(HF)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유관기관 합동) : 분기 1회
- 중점관리사업장 특별점검 : 년 2회, 문제사업장 선별점검
  - 시·군, 환경청, 기업환경협의회 환경기술인 합동점검
- 장마철 유독물 저장·보관실태 일제감시 : 노후·훼손시설 여부
-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 대상 55개 소
  - 자체방재계획 적정 수립·시행 및 안전작업여부 중점점검
-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검사 : 대형 30여개 시설, 전문가 참여 검사

#### 〈애로사항〉

- 지자체 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함
- 관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기술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지도점검이 어려움
- 영세한 중소 사업체의 자발적 비용투자(방재용품 구비 등) 유도가 어려움

###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수습대책

- 유독물 유출 가상훈련 실시 : 사고대비물질 사용 55개소 대상
  - 사고대비물질 누출 방재 도상훈련 및 주요 산단별 합동훈련
- 환경안전사고 자율방재체제 구축 : 주요 3개 산단
  - 지역별 기업환경협의회 자발적인 “자율방재단” 설립
  - 자율적으로 유독물 취급자 교육, 안전작업 감시 및 방재훈련 실시
-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 위험물질 관리 유관기관 대상
  - 최선의 사고 수습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 정비

#### 〈애로사항〉

- 기관별 근거법이 상이하여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움
- 사고수습을 위한 사업장 환경 정보(관망위치, 점검기록 등)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움

### Ⅲ.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 유관기관 협력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기반조성의 3대 추진전략 필요

##### 1. 한계점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 최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각자의 이해당사자 의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임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담당자(행정, 기업,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인력과 전문성 부족, 정보지원 시스템 미비, 예산 및 협력체계 결여 등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움
- 아무리 안전관리가 완벽하여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해당기업과 지자체의 초동대응체계를 확고히 하여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DB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강화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인력, 전문성 및 유관기관 소통 부족 → 유관기관 초동대응 협력강화
    - ① 유해화학물질 사고전달체계가 명확치 않아 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우며, 근거법이 다른 유관기관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
      -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합동방재훈련 의무화
    - ② 지자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함
      - 지자체 부족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방재센터<sup>1)</sup>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체계 정비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획득 및 공유 부족 → 유해화학물질 정보지원 및 공유시스템 구축
    - 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구축 및 공개가 원활하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 DB(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 내외 환경기반시설, 관련 시 설기준, 사고피해 예상지역 등)를 구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
    - ②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기술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사고시 준비해야할 방재용품 등이 명확하지 않음
      - 법개정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기술기준 구체화를 요구하고 사고사례분석을 통해 사고유형별, 물질별 비상용품을 명시

1)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예방과 대응, 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부처 전문센터

• 장비, 법제도 등 안전관리 기반부족 →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조성

- ① 영세한 도내기업의 경우 노후시설 및 고가의 안전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노후시설에 대한 기업 차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함
- ②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개정은 무조건적인 규제강화가 아니라 현실가능성, 사고예방 실효성 범위 내에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책은 정비 중에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표 5〉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전략 및 개선방향

| 한계점                                                                                                                     | 대응전략                                                                       | 개선방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인력, 전문성 부족</li> <li>•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소통 부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초동대응 협력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방재훈련 의무화</li> <li>•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 정비</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환경정보, 상하수도 관망 등 환경정보 및 공유체계 부족</li> <li>• 기술기준, 방재용품 등 관련 규정정비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정보지원 및 공유시스템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 DB 구축 및 공개</li> <li>•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기술기준을 구체화</li> <li>• 사고사례분석을 통해 사고유형별, 물질별 비상용품 제시</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영세기업의 지원책 미흡</li> <li>•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대응체계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기업 투자 유도 및 영세기업 지원방안 모색</li> <li>•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li> </ul>                                  |

## 2.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세부대책

### Ⅰ 유관기관 초동대응 협력강화

#### 가. 유해화학물질사고 초동대응 협력강화

##### ● 배경 및 필요성

-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사고는 발생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초동대응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사고유형, 물질특성별 초동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환경부 및 관련 전문가)
- 취급업체, 행정, 유관기관의 정기적인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업데이트
- 업무시간외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거점별 당직제 시행
- 유해화학물질 등록시 비상연락망 등록 및 지역 자율방재단 의무참여
-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지역거점 병원 응급실 협력강화 등

## 나. 합동방재센터 지원 및 활용

###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부처별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구분되어 하나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만 연 10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기관별로 대응하여 신속한 사고 예방·대응·복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단절된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지자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별 역할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킨 '합동방재센터'를 운영예정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참여하는 40명 규모(규모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예정)의 합동방재센터를 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 6개 거점산단 구역 내에 운영 또는 운영 예정임
-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소방방재청 산하 지역별 6개 "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하여, 6개 합동방재센터에 소속되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함
-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6개 합동방재센터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별 합동방재센터 지원함

## 다. 자율방재 협력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관할 시군, 소방안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 의료원, 지역주민조직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는 모의 훈련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협력강화 필요

###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상황전파 훈련
- 체계적 사고수습 (방재활동 및 구조, 구급)
- 유관기관 및 단체 역할분담 등
  - 치수방재과, 소방안전본부의 업무지원 강화 (재난정보시스템, 비상연락망 등의 전문성 높음)
  -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협력방안 (검측, 감시기능 강화)
  - 기존 지역주민조직 연계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 Ⅱ 유해화학물질 정보지원 및 공유시스템 구축

### 가. GIS<sup>2)</sup>기반 환경관리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소통·협력을 위한 '정부 3.0'과 정보통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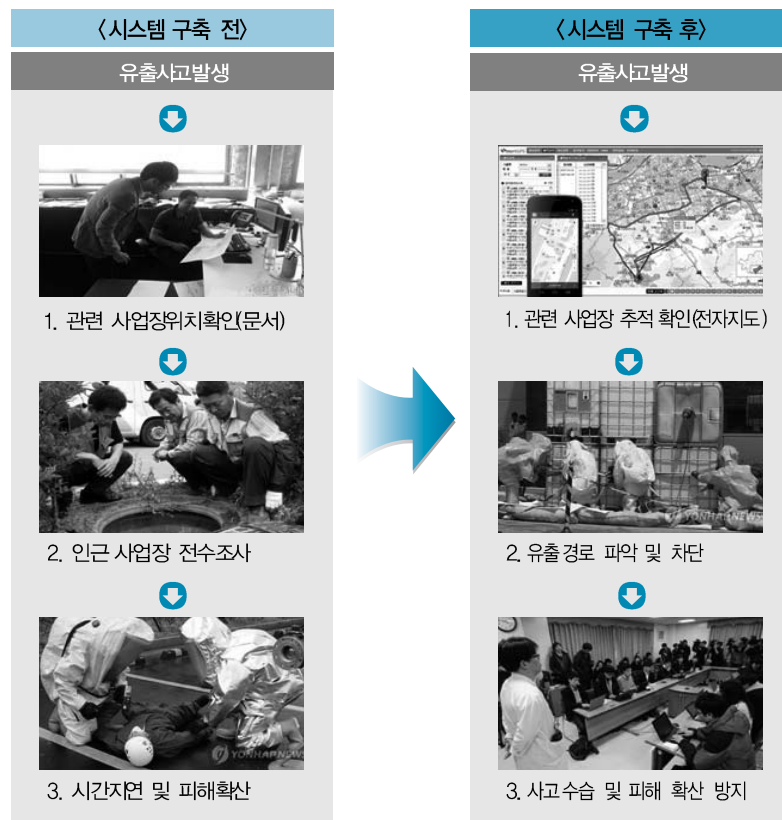
2)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공간정보(위치 및 속성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후 이를 연계시켜 각종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시스템



- 술(II)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도입함
- 주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는 지자체의 책무이므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점검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①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사업장 인근 오수·폐수·우수 관로 정보가 미비하여 신속한 사고처리가 어려우며, ②환경관리업무 수행시 기 확보한 정보(취급물질, 점검결과, 특이사항 등)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정부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GIS기반 환경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각 사업장의 취급화학물질, 배출시설, 오·폐·우수 관망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출사고 발생시 유해화학물질의 이동 경로 파악과 차단, 다양한 사고대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IT기술을 접목한 공공정보 활용사업으로 ‘정부3.0 + 창조경제’ 환경분야 모델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
-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현장 지도점검 및 GIS DB 기반 종합환경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함



〈그림 5〉환경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의 활용

## 나.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피해지도 작성

### ●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사고대비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시 대기확산에 의한 피해지역을 시나리오(풍향별, 물질별, 지역별 등)에 따라 모의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주요 산업단지 물질별, 주풍향별 피해지역을 모의하여 피해지역지도를 작성하고 대피경로를 숙지하게 함
- 작성한 피해지도를 공개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지역사회 감시망을 강화함



〈그림 6〉유해화학물질 피해지도 작성(예)

## 다.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대응 정보 제공

### ● 배경 및 필요성

- 반복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 사고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물질별, 유형별 사고사례집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사고사례집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배포하여 현장의 문제점, 조치과정,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방재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각각의 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안전관리 문제점, 사고수습 과정,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 관련 방재물품, 세부피해현황 및 조치결과를 기술함
- 사고사례집을 GIS기반 환경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에 탑재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홍보·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활용함

## Ⅱ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조성

### 가. 사업장 방재물품 관리 및 자원사업

####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는 사업장 규모에 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종류가 다양한 특징이 있음
- 방재물품의 장기 비치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사고발생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재물품 판매업체가 정기적으로 방재물품을 관리하고 일정비용은 행정 또는 지역의 대(중)견기업에서 지원받는 '방재물품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함

● 주요내용

- 방재물품 판매업체와 협력체계 모색
- 지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
- 영세사업장 방재용품 및 사고대응 사업 지원
- 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지원 등

####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 개정방향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전라북도 환경기술인협회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함

※ 전북환경기술인협회

- 전라북도 환경기술인의 지원 및 교류, 오염방지 시설운영에 관한 교육 등으로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과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현재 환경기술인협회를 중심으로 주요 3개 산단(익산, 군산, 완주) 자율방재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고 대응을 위한 방재물품 및 자율방재단 지원, 사후관리를 위한 복구비용 및 장비지원 등 예산이 필요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예산확보를 검토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중 「기금의 용도」부분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사업의 운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함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사업을 추진함

---

#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